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 규정 마련 등>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7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정부의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경관 훼손, 소음,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지역 주민의 반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단위: GW)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재생에너지	19.6	23.8	26.9	30.0	33.3	37.1
태양광	14.6	18.5	21.2	23.9	27.1	30.8
풍력	1.6	1.7	1.9	2.2	2.2	2.4
바이오	1.3	1.4	1.8	1.8	1.8	1.8
수력	1.8	1.8	1.8	1.8	1.8	1.8
해양	0.3	0.3	0.3	0.3	0.3	0.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지난 2021년,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주민이 채권 투자, 펀드 가입 및 협동조합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¹⁾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 참여 주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단위: 개소, MW)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태양광	1개소	6개소	32개소	100개소	44개소	46개소	22개소	16개소
	(2MW)	(7MW)	(144MW)	(461MW)	(347MW)	(366MW)	(255MW)	(133MW)
풍력	-	-	1개소	1개소	-	5개소	4개소	4개소
	-	-	(43MW)	(28MW)	-	(129MW)	(153MW)	(241MW)
합계	1개소	6개소	33개소	101개소	44개소	51개소	26개소	20개소
	(2MW)	(7MW)	(187MW)	(489MW)	(347MW)	(495MW)	(408MW)	(374M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이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발전기금 지원 형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²⁾

2) 참고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시 해당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대하여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문제를 지적한 것임.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및 활성화 목적으로 주민참여 조건과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공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사업 참여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 규정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분 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에게 지급하는 배당·수익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물, 해양, 풍력, 태양광, 경관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개발이익의 환원금“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서왕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u> ”이란 <u>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분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수익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물, 해양, 풍력, 태양광, 경관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개발이익의 환원금을 말한다.</u>

현행법 제27조의2³⁾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발전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REC) 중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최근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참여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배당·수익 또는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법적·사실적 사용료, 임대료, 마을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개발이익의 환원금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도입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에는 지분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수익과 그 성격 및 지급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제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적인 발전수익에 대한 배분은 발전사업자와 투자자 간 사적 계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은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적용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REC 판매수익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금 관련 사항 추가

개정안은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10호 신설).

현행	서왕진의원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③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조⁴⁾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금 운영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면, 해당 정책의 종합적 수립·관리를 통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10 –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⁵⁾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로 인한 REC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제외하고는 주민 참여 촉진 목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현재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 주민 참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용자와 같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동 법 제27조⁶⁾ 및 「전기사업법」 제49조⁷⁾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임.⁸⁾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8) (커뮤니티 솔라) 주민이익 공유모델 확산을 위해 계통 부족지역의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ESS설비 구축비용을 최대 90% 지원

(ReSCO)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계, 시공, 운영관리, 교육 등全过程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를 운영 중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에도 정책 금융 지원이나 추가 REC 부여 등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만큼, 개정안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기존 제도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주민참여 및 개발 이익공유금에 관한 사항 조례 위임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금융지원사업)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 설치비용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중

(추가 REC 부여)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최대 0.3의 추가 REC 부여

(경쟁입찰)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를 평가하여 점수 부여

(이격거리) 주민참여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미적용

현행	서왕진의원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 ③ (생략) <신설>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현행법 제27조의2⁹⁾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방식을 규정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의 구체적 조건이나 개발이익의 공유 방식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조건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를 설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의 조건이나 개발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주민참여 조건이나 이익공유 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역간 제도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자의 사업추진 여건이나 주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의 조건이나 개발 이익공유금의 지급기준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10) 참고로, 개정안의 제안이유 중 감사원이 지적한 신안군 사례는 개발이익 공유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주민동의를나 공동지분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한 점을 문제삼은 것인 만큼, 단순히 조례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참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 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마. 부칙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서왕진의원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란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이나 사항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임.

그런데 안 부칙 제2조의 취지는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안 부칙 제2조는 특정 대상이나 사항에 대한 적용 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반영 시기에 관하여 예외를 정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므로, 법률 개정에 따라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과 다른 별도의 시기 등을 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특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1. 사업목적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주요 요건

- (지원 규모) 500개 이상 ('26년 총700개소→'30년 3,000개소)
- (참여 대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신청,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도 협력
 - (마을의 범위)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협동조합)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주민의 자격을 갖춘 자 10인 이상 참여
 - (주민동의)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70% 이상 주민동의 필요
- (설비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 다만 1MW 초과시 他요건 충족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재원 확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가 필요, 조합원 출자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마을기금, 지방소멸기금 등을 보조재원으로 활용
 - 수익은 정관,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에 활용
- (ReSCO* 활용) 발전소 건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 *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 (국산화 원칙)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 (수입 안정성 지원)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등을 통해 전력판매 지원

3. 정부 지원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최대 85% 금융지원, ESS 설치비, 주민 교육·컨설팅 및 부지 발굴 및 계통 연계여부 상시 확인,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등

4. 신청서 접수, 선정결과 발표 일정 (공모일 : 3.31)

- 1단계 마을은 5월 말까지 1차 접수 → 7월 중 선정결과 발표,
2단계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접수 → 9월 중 선정결과 발표